



2021학년도 후기 학위취득 유예 시행 안내

1. 학위취득 유예 목적

-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화학습의 기회 제공
- 산업체의 인력채용 기준에 적합한 역량 강화 필요
- 취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학 자체 역량 강화

2. 관련규정

- 학칙 제48조의3(학위수여의 유예)
- 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

3. 학위취득 유예란

- 학칙 제48조(학위수여)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

적용대상	등록방법	기간
전문학사 및 학사과정 졸업예정자	수강신청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(※필수사항임)	학기 단위로 총 2회 신청가능

4. 신청자격 및 제한

가. 신청자격

- 1) 학칙 제9조(수업연한)에 규정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
- 2) 학칙 제46조(졸업) 및 제47조(후기졸업)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

나. 신청제한

- 1) 수업연한 초과자(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을 모두 마쳤으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)로서 휴학 중인 자
- 2) 외국인 전형 학생
- 3)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
- 4) 산업체위탁 교육과정 학생
- 5) 계약학과 학생

5. 신청기한 : 2022. 7.11(월) ~ 7.13(수), 15:00까지 학과사무실 제출 (※기한엄수)

6. 제출서류

- 가.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부
- 나. 학위취득 유예 서약서 1부
- 다. 예비수강신청서 1부 (※수강 신청 예정자만)

7.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기간

가. 등록구분

수강 신청자	미수강 신청자
- 1~3학점 : 수업료의 1/6 - 4~6학점 : 수업료의 1/3 - 7~9학점 : 수업료의 1/2 - 10학점 이상 : 수업료 전액 (※예비수강신청서 제출)	- 시설사용료 : 수업료의 10% 납부

나. 납부기간 : 2022. 7.18(월) ~ 7.20(수) 15:00까지

다. 납부방법 : 학사운영팀 방문하여 고지서 출력 후 현장납부(※카드불가)

라. 수강신청 : 2022. 8.16(화) ~ 8.17(수) 15:00까지

8. 기타 유의사항

가. 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함(총 1년)

나. 정해진 기간 내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며, 당초 졸업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처리 및 학위를 수여함

다. 등록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

라.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중에 휴학할 수 없음

마.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에 수강(재수강 불가)을 취소할 수 없음

바. 학위취득 유예자는 유예기간 내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만 가능함

사.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

9. 기타 문의

- 동남보건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 (031-249-6222)

붙임 : 1. 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1부
2. 학위취득 유예 서약서 1부
3. 예비수강신청서 1부. 끝.